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19
----------	-----

2020. 6. 24.(수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0년 5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6월 9일

-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바이오산업국장 이재영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천연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,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지원사업의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서완석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천연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국가기술�기본법」 제4조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.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천연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시책 수립·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.
 - 안 제5조는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6조는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위원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20. 4. 6.~'20. 4. 2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천연물산업 시장이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, 천연물에 대한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천연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사업인 천연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천연물”이란 「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천연물이나 광물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을 말한다.
2. “천연물산업”이란 천연물의 효능과 기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천연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도지사는 천연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내 천연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
2. 도내 천연물산업 기술개발·연구사업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3. 도내 천연물산업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
4. 도내 천연물산업 연도별 육성 지원계획
5. 그 밖에 도내 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) 도지사는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실용화, 판로 등 지원
2. 천연물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
3. 천연물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
4. 천연물산업 관련 세미나,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, 유치,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
5. 해외 교류, 해외시장 진출 또는 마케팅 활성화 지원
6. 국제 공동 연구개발 또는 협력사업
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사업의 평가)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·감독하며,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을 평가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, 지도·

감독 및 평가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제8조(위원회 설치) 천연물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
1. 제5조의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2. 천연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제6조에서 규정한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·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천연물산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, 1명은 천연물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·국장이 되고, 나머지 1명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장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사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위원의 위촉 및 해촉)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천연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
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해당 경력이 있는 사람

2. 그 밖에 천연물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②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의 개인사정,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
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(解囑)할
수 있다.

제14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천
연물산업 담당과장이 된다.

제15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
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비밀의 누설금지)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
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
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
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
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천연물"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·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(産物) 등 생물을 기원(基源)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.
2. ~ 4. <생략>

□ 과학기술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)

- ① <생략>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8. 27.>
- ④ ~ ⑤ <생략>

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는 천연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하여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,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비용발생 요인

- 동 조례안 제6조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, 제17조 위원회 참석수당 등

3. 관련 조문

- 안 제6조(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)
- 안 제17조(수당 등)

4. 비용 추계결과

구 분	세부내용						
가. 재정수반요인	1.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. 위원회 구성·운영에 따른 참석수당						
나. 추계의 전제	· 2030 천연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의해 추계						
다. 추계결과	구 분 (단위 : 백만원)	계	기투자	2020	2021	2022	2023~ 2030
	비용추계 내역	317,670	28,315	16,635	33,955	26,515	212,250
	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	317,490	28,300	16,620	33,940	26,500	212,130
	위원회 참석수당*	180	15	15	15	15	120
*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임							
라. 재원조달방안	· 국·도·시군비 및 자부담 등						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계	기투자	2020	2021	2022	2023~2030
천연물 조직배양사용화 시설 구축 등 27 개 사업	317,670	28,315	16,635	33,955	26,515	212,350

6. 작성자 : 바이오산업국 화장품천연물과장 최 응 기